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식품부

2019년 6월1일부터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19.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입니다.

'19.6.1일부터 시행

해외여행자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상향

-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총 46개국 :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개국, 러시아 등 유럽 13개국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확인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접속

동물검역 ➡ 수입위험분석 ➡ 해외가축전염병 발생동향 ➡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 ①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②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9.7.1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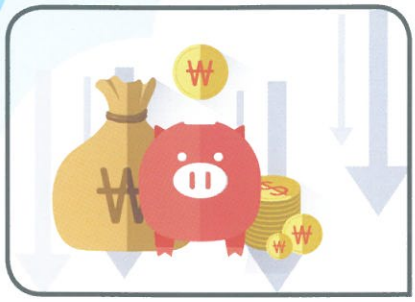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 감액**
- 가축평가액 **20%를 감액**하는 경우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과 관련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 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기준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과태료 기준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농가 보호 강화

-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

  *'17년도 통계청 농가소득통계 : 전국평균가계비 255만원,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13만원(차이 58만원)

'19.7.16일부터 시행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상담치료 이외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부담
  -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제3조의2 (가축전염병기동 방역기구의 설치 등) [19.07.01. 시행]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총괄자를 '축산 관련 고위공무원단'에서 '방역 관련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19.07.01. 시행]	· 재활용 처리된 가축의 사체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 가능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19.07.01. 시행]	· 생계안전비용의 지급기준을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개선
제12조의2 (심리적·정신적 치료) [19.07.16. 시행]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각각 부담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치료 신청기한을 없애 언제든지 치료 가능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19.07.01. 시행]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액 (40% 감액 → 100% 감액)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과 관련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19.06.01. 시행]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중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 구제역 백신접종명령 위반시 과태료 기준 상향 [19.07.01. 시행]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검사, 주사 등 명령 위반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신설)	-	-	-	500	750	1,000
	구제역 예방접종 이외 명령 위반	200	400	1,000	200	400	1,000

법령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으로 연락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044-201-1000, 2520(농림축산식품부), 1588-4060(관할지자체), 1588-9060(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